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46호 2020. 10. 5(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 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91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
례안 입법예고 ----- 52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6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북항단지 128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10.0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10-0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37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단지로 128 (원창동)	20190121	북항배후단지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신흥 DV HUB(물류창고)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76-6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51번길 15 (석남동)	20090922	신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630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285번길 13 (석남동)	20171025	봉수대로 시작지점부터 약 2,85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16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대방건설(주) (대표 구찬우)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 나. 대지면적 : 69,448㎡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21,097.4742㎡ (지하2층, 지상19~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279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557,402,785천원

4. 사업기간 : 2019. 03. 12. ~ 2022. 03. 03.

5. 변경사항

-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및 조경면적 변경
- 나. 차량 차단기 위치 변경
- 다. 단열재 변경(다락 지붕,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등)
- 라. 지하1층 상가주차장 층고 변경
- 마. 지하2층 발전기실 출입문 및 집수정 위치 변경
- 바. 근린생활시설 지붕 및 입면, 내부 층고 변경 등
- 사. 어린이집 지붕 및 입면 변경
- 아. 열교환기 수량 및 용량 변경
- 자. 지하주차장 급배기 송풍기 형식 및 수량 변경
- 차. 누락 및 오기 사항 정정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6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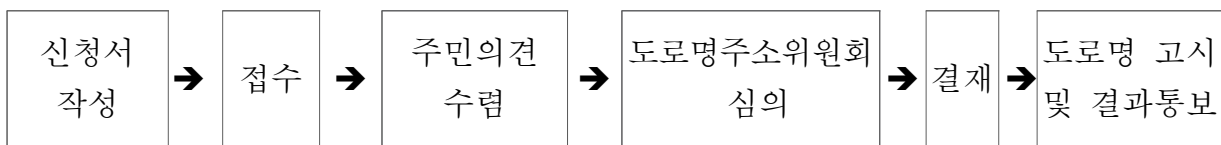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20. 10. 5.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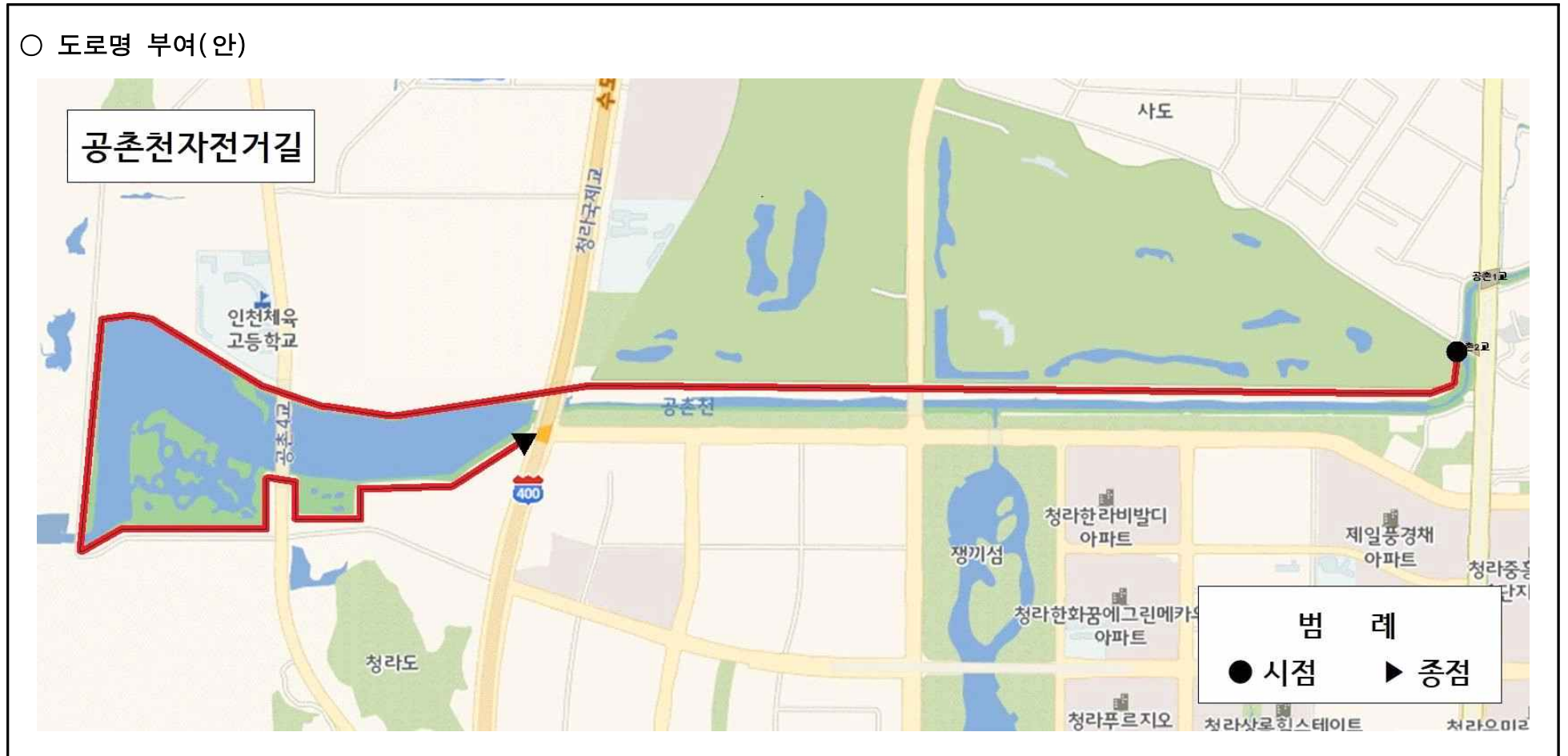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연번	도로 구분	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 (m)	관할 행정구역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m)	폭(m)			
1	길	공촌천자전거길	연희동	428-126	청라동	7-18	6325	3	20	청라2~3동 검암경서동	공촌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

○ 도로명 부여(안)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1491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 및 범위, 적설량, 제설방법 등 명확한 제설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 등에 대한 법률위임 규정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자 함.(안 제1조)
- 적설량 및 적설시점 등 제설·제빙 작업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6조)
- 제설·제빙 작업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설로 인한 노면상태 악화 및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032-560-4702, 팩스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 및 범위, 적설량, 제설방법 등 명확한 제설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 등에 대한 법률위임 규정을 구체적으로 표기 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적설량 및 적설시점 등 제설·제빙 작업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6조)

다. 제설·제빙 작업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설로 인한 노면상태 악화 및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2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조례 일부개정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라.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에 따라” 를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 으로, “규정함으로써” 를 “규정하여” 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공작물” 을 각각 “인공구조물” 로 하고, 같은 호 중 “신체장애인용” 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및” 을 “·광역시도 및”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행자 전용도로” 란” 을 ““보행자전용도로” 란” 으로 하고, “공작물” 을 “인공구조물” 로 한다.

제3조 중 “보행자 전용도로” 를 “보행자전용도로” 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경우:” 를 “경우에는” 으로, “순(順)” 을 “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 를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오전 11시까지
 -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에는 즉시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에는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비치하여”를 “갖춰 두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u>규정함으로써</u> 국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u>공작물</u>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u>공작물</u>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u>신체장애인</u>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u>보행자 전용도로</u>”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u>공작물</u>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7. (생 략) 	<p>제1조(목적) ----- <u>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u> ----- ----- <u>규정하여</u>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u>인공구조물</u> ----- ----- 3. ----- ----- <u>인공구조물</u> ----- ----- 「<u>도로교통법 시행규칙</u>」 제2조에 따른 <u>보행보조용</u> ----- -----. 4. ----- ----- <u>·광역시도 및</u> ----- ----- -----. 5. “<u>보행자전용도로</u>”란 ----- ----- ----- <u>인공구조물</u> -----. 6.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u>보행자 전용도로</u>,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p>	<p>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 ----- <u>보행자전용도로</u> ----- ----- -----.</p>
<p>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順)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p>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경우에</u> 는 ----- 순 2. ----- <u>경우에는</u> -----
<p>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u>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u> 다만 <u>야간(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u>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2016.7.8, 개정 2016.7.8, 2018.4.18) (생략)</p>	<p>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u>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u>시설물의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에는 즉시</u>

현행	개정안
<p>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p> <p>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도의 눈과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 도로의 눈과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p>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p> <p>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 ----- 갖춰 두어 ----- -----.</p>	<p>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 ----- 갖춰 두어 ----- -----.</p>

관계 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0. 9. 12.)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25.)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의 건 제 출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4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 조정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과 운영체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의 띄어쓰기 적용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명시(안 제2조)
-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 조정(안 제4조제1항제3호, 별표5, 별표6)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별표2, 별표5, 별표6)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보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에 준비단계 추가(안 제8조제1항, 별표4)
- 경계단계 및 비상단계 시 상황관리 총괄반 구성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별표5, 별표6)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명시(안 제13조제1항)
- 협업기능반 개수 변경(별표1)
- 협업기능반 담당부서 변경(별표 5, 별표6)
- 인용 조문 번호 수정
(안 제3조~제7조, 안 제13조제2항~제6항, 안 제15조~제19조, 제9조제2항
제2호 중 안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중 안 제4조제1항제6호)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개정
(제3장의 제목, 안 제14조제6항, 제19조제3항제4호)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심곡동) / ☎ 032-560-4705,
FAX 032-560-273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로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 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을 “(대책본부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대책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수습”으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대책본부 편성기준) “을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본부의” 를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경계, 1, 2~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라. 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8과 같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제3조제3항” 을 “제4조제2항” 으로 하고, “제9조” 를 “제10조” 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제6항” 을 “제4조제1항제6호” 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대책본부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20조)제3항제4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 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 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p>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p> <p>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p> <p>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p>
		<p>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p> <p>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p> <p>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p> <p>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p> <p>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p> <p>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p>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관리
나.협업기능반	1) 긴급 생활 안정지원반	<p>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p> <p>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p> <p>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p> <p>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p> <p>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p> <p>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p>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p>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p> <p>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p> <p>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p> <p>라)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p>
	3) 긴급통신지원반	<p>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p> <p>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p> <p>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p> <p>라)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p>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p>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p> <p>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p> <p>다)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p>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p>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p> <p>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p> <p>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p> <p>라)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p>
6) 재난수습 홍보반	<p>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p> <p>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p> <p>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p> <p>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p> <p>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p> <p>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p> <p>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p> <p>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p> <p>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군·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p>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p>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p> <p>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p> <p>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p> <p>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p> <p>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p> <p>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p>
8) 교통대책반	<p>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p> <p>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p> <p>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p> <p>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p> <p>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p> <p>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p>
9)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p>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p> <p>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p> <p>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p>

		<p>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p> <p>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p> <p>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p>
10) 자원봉사 자원및관리반		<p>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p> <p>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p> <p>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p> <p>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p>
11) 사회질서 유지반		<p>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p> <p>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p> <p>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p> <p>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p> <p>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p>
12) 수색·구조 구급반		<p>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p> <p>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p> <p>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p> <p>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p> <p>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p>
다. 관계 지역 책임기관 지원반	다. 관계 지역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현장통합지원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서구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혁신과
2.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홍보정책과 기획예산실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안전총괄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안전총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체육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경제에너지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소관 부서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환경관리과

	<p>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p>	<p>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p>
12. 고용노동부	<p>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p>	<p>안전총괄과</p>
13. 국토교통부	<p>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p>	<p>도시기반과 교통정책과 안전총괄과 도시기반과 생태하천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건축과</p>
14. 해양수산부	<p>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p>	<p>경제에너지과 생태하천과</p>
15. 행정안전부	<p>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p>	<p>도시기반과 소관 부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p>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에너지과
17.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체육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환경안전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관련 부서 각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부서장
실 무 반	안전총괄과 공무원과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비고: 1. 준비단계는 안전총괄과 소속 직원이 지역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안전총괄과는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발생 시의 서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경계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환경안전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재난 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2협업기능반 (a)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환경장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기획예산실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도시기반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문화관광체육과
		마)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에너지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서부소방서 (안전총괄과)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환경안전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상황관리 총괄반	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 재난 총괄부서 3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라) 행정지원팀	· 총무과
	2)협업기능반 (α)	가)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긴급통신지원반	· 기획예산실
		라)시설파해응급복구반	· 도시기반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문화관광체육과
		마)에너지공급파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에너지과
		바)재난수습홍보반	· 홍보정책과
		사)재난관리지원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사회질서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타)수색, 구조구급반		· 서부소방서 (안전총괄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서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환경안전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a+β명		
	반 장	안전총괄실장		
	1)상황관리 총괄반	가) 재난정보수집분석및 전과, 재난상황 관리팀	·재난 총괄부서 3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총괄부서 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5명	
		라) 행정지원팀	·총무과	
	2)협업기능반 (a)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장비반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기획예산실	
		라) 시설해응급복구반	·도시기반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문화관광체육과	
		마) 에너지공급과해설 기능복구반	·경제에너지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홍보정책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타) 수색 구조구급반	·서부소방서 (안전총괄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서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6]

사회재난 발생시의 서구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환경안전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 재난상황 총괄반	가) 상황관리총괄팀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나) 수습상황과약팀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기획예산실
		라) 시설과해응급복구반	· 도시기반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에너지과, 문화관광체육과
		마) 에너지공급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에너지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서부소방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협업반(β)		·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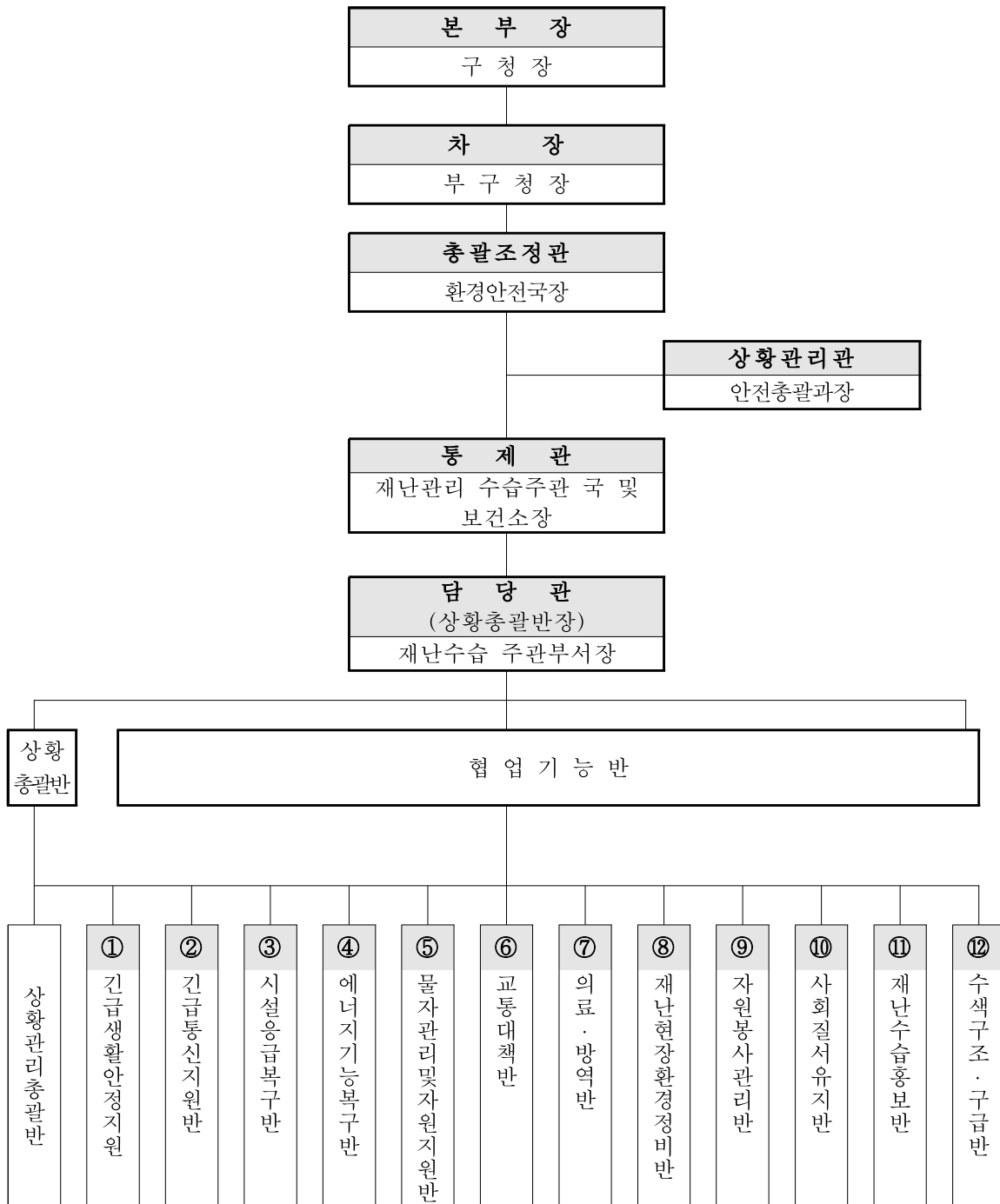
[별표 7]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별표 5 및 별표 6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 재난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지진·지진해 일 및 화산	1) 경계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서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비상1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서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비상2~3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회 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서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표 8]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관계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정의) ○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 4. (생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 12. (생략)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 ⑤ (생략)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생략)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23.]

실·국·소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소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소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4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정과 임명의 단어를 혼재 사용하는 것을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목에서 현장책임관 지정을 임명으로 개정(안 제2장)
- 제목에서 현장책임관 지정을 임명으로 개정하고, 본문 중 지정을 임명으로 개정(안 제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심곡동) / ☎ 032-560-4705,
FAX 032-560-273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임명”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을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임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 을 “임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 을 “임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국·소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소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소별	제출의견	검토내용